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무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057

발의연월일: 2022. 4. 1.

발 의 자:한무경・김정재・태영호

박 진 • 최승재 • 양금희

金炳旭・이만희・지성호

추경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철광석, 원유,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.

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자 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떠안으면서 납 품대금에 원자재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음.

이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,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 록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(안 제21조제3항 및 제4 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물품등의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그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
- 2.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이 상승 또 는 하락하는 경우 그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
- ④ 제3항에 따른 변동분의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21조(약정서의	발급)	1 • 2	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・②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	③ 제1항에 따른 약정서에는
			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
			<u>야 한다.</u>
			1. 물품등의 원자재 가격이 100
			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
			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
			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그
			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
			2.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
			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이
			<u>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그</u>
			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
<u> <신 설></u>			④ 제3항에 따른 변동분의 산
			정 기준 및 산정 방법에 필요
			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			<u>다.</u>